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상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82
----------	-------

발의연월일 : 2021. 9. 2.

발 의 자 : 광상도 · 이채익 · 송언석
조경태 · 김태호 · 한기호
구자근 · 金炳旭 · 박대출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혜택이 기업의 이전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아니하여 실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의 정도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지방이전”을 “지방이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으로 이전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1.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 등 생산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의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u>지방이전</u>)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u>지방이전</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 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u>지방으로 이전하는</u>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 ① ----- ----- ----- ----- -----다음 각 <u>호에 해당하는</u> ----- ----- -----.
<신 설>	1. <u>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u>
<신 설>	2. <u>지방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u>
<신 설>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 -----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